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여주대학교 간 상호협력 협약서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여주대학교(이하 “양 대학”이라 한다.)는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우수인력 양성하고 산학 및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양 대학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여 원활한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며 국가와 인재양성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대학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제 규정 및 관계 법령 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대학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및 협력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권역 간, 대학 간 산학협력 공유·협업 활성화 추진 협력
2. 산학협력 선도모델 및 교육·연구 성과 등 정보 교류
3. 산학협력 프로그램 콘텐츠 공동 기획
4. 미래혁신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및 대학생 취·창업 지원 협력
5. 기업·지역과의 산학협력 활동 및 양 기관의 가족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
6. 산학 학술회의, 심포지엄 등 공동 추진 협력

7. 입학자원 확보 및 졸업생 취업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
8. 대학의 실무행정 및 업무 교류 협력
9. 양 대학의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
10. 기타 양 대학의 공동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교류 및 공유 등

제4조(정보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) 양 대학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 양 대학은 본 협약서에 따라 협약사항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대 기관과 서면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여주대학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본 협약 외에 별도의 사항이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약계약서를 운용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협약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대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2월 16일

국립 강릉원주대학교
총 장 반 선 섭

반 선섭

여주대학교
총 장 고 기 채

고기채